

마을 만들기 - 주민자치와 복지의 상생



Village-Making: Balancing Community
Autonomy with Welfare

김필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행될 마을자치와 주민 참여의 주축이 될 것이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추진으로 향후 복지서비스의 전달 주체는 읍면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환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틀 안에서 민관 협력의 주된 파트너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18년 역사를 가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복지 프로그램(서울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40%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의 민간 파트너로 가장 적합하다. 여기서는 기존 주민자치회의 복지 프로그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융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 들어가며

사회복지란 한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간접적인 정책을 말한다. 여기서 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와 그러한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까지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사

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인 급부와 서비스 급부를 포괄한다. 주로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거 안정, 공중위생, 비행 청소년 문제 대책 등이 포함된다(“사회복지”, 2017). 한국에서는 헌법(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과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장기본법 등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당초 국가의 시혜적인 정책에서 출발한 사회복지지는 자본주의의 성숙과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게 되었다(김수신, 정홍익, 1997, p. 7).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국민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가(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을 내세워 유지되어 왔던 중앙집권적 행정국가는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와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정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지역¹⁾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이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사회복지, 자치분권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시책 10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국무조정실, 2017).

표 1. 사회복지와 자치분권 관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전략	번호	과제명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75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pp. 20-21.

1) ‘지방’이라는 용어는 ‘중앙’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어 ‘지방대학’ 등과 같이 차별적이고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지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와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는 상호 밀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을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왔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자치분권과 사회복지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읍면동 정책은 복지 기능과 인력 확대 등 행정 중심의 개편에만 치중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나 마을공동체와의 연계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고, 국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가장 낮은 단위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서비스·인력 확대, 지역의 유희 공간 개선을 통한 주민자치공간 설계 등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주민협의체로서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 부여 및 마을계획에 대한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행될 마을자치와 주민참여의 주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환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틀 안에서 민관 협력의 주된 파트너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사업(마을 만들기)에 사회복지사업이 자연스럽게

게 녹아들어 정부의 사회복지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사업(마을 만들기)과 사회복지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2. 지방자치와 주민자치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4번째 과제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이다. 이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마을자치 활성화’이다.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49개 읍면동)에 대해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 주민 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인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 93).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자치분권 시대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다.

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본질

국가 권한의 중앙 집중에 의한 중앙정부 관료조직의 비대화는 거대한 항공모함에 비유된다. 비대한 중앙관료조직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

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마다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지방자치체제가 적합하다.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치안 유지와 국가의 안정, 국가건설과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 실시를 연기하다가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 정부는 준비 부족, 지역주의와 부패 만연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며, 1995년 기초 및 광역단체장 직선을 통해 완전하게 부활되었다(국가기록원, 2017).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단체자치의 요소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자주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 조직을 구성하고 자치 기능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법률적·제도적 의미의 자치이다. 주민자치는 주어진 법과 제

도의 틀 안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무를 자치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통해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으로 확보된 자치권을 주민자치를 통해 실질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자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질화해야 한다.

나. 주민자치회의 개요

1) 주민자치회의 등장 배경

지방자치는 정치적 또는 관리적 권한이 근린 수준에까지 위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린 수준 행위자들의 역량 강화(empowerment)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차원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 주민과의 상담(consultation), 숙의적 포럼(deliberative forum), 주민의 직접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성과 같은 형태의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보다는 시군구의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이 지방자치의 단위로 적합할 것이다.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외국의 기초자치단체보다 인구와 면적 면에서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등의 규모와

유사한 것은 읍면동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의 행정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복지 등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적인 지방자치사무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이 읍면동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읍면동을 복지 전달체계의 허브로 삼겠다는 정책과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읍면동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은 읍면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는 지역 단위 통치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지방자치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복잡성·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 문제를 정부나 시장과 같은 단일 행위자나 부문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성 속에 등장한 개념이 ‘거버넌스’이다. 근본적으로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주민 조직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Osborne and Gaebler, 1992). 여기서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민간 측 파트너로 순수 민간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읍면동 이하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조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반상회, 리개발위원회, 영농회, 작

목반,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구역이 일정하지 않고 구성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 역시 아파트의 개보수 등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민자치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가변영회 등과 같은 일종의 직능단체로 볼 수 있다. 반상회나 리개발위원회는 일정한 안정적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주민이 참여하고 있지만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시군구에 대한 민원이나 시군구 시책사업 지원 등만을 다루고 있으며 공무원이 주도하므로 주민자치조직으로 볼 수 없다. 영농회나 작목반은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이지만 특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합 방식이고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이므로 일반적인 주민자치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아파트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은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이고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성원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자치 협력 조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이라는 일정한 구역이 있고 조례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가능하고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사회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 문제에 대한 관여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주민자치조직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임원의 대표성이나 임원 선출의 민주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김필두, 2013).

표 2.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의 종합 비교

자치조직명	법적 근거	구역 설정	구성원	내부 조직	주요 활동	행정과의 관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주택법 43조 시행령 50조	단지 단위이므로 구역 제한이 없음	해당 아파트 거주자	회장: 1인 이사: 2인 이상 감사: 1인	아파트의 하자 보수 등 유지·관리, 안전 관리	시군구에서 정한 규약 내에서 활동
아파트 부녀회	없음	아파트 단지 단위	해당 아파트 거주 여성	회장, 총무, 회계	아파트 주민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이웃 돕기 등 다양한 자치활동	관계 없음
반상회	각 시군구 예규, 훈령	읍면동 산하 통반	관내 거주 주민 전체	통장이 회장 겸임	시군구 및 읍면동 협조 사항, 민원 사항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참석하여 안건 제시
리개발위원회	각 시군 조례	읍면 산하의 리	리 거주 주민 전체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	민원 사항, 자체 개발 사업, 읍면 요구 사항	읍면장의 자문 역할
영농회	없음 영농조합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특별한 규정이 없음	농어민, 농산물 생산자 단체	조합장, 이사, 감사	농업 생산품의 공동 생산, 공동 출하, 농사 교육 및 정보 교환 등	영농회별 지역 보조금 지급
작목반	없음	특별한 규정이 없음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어민	회장, 총무, 감사	단체 구입과 판매, 공동 생산과 출하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되면 정부보조금 지급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조직법	읍면동 단위	읍면동 관내 거주 여성	회장, 총무, 감사	봉사활동, 사회활동, 취미·교양활동	읍면동 행사 등을 적극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각 시군구 조례	읍면동 단위	관내 거주 주민 전체	위원장, 총무, 감사, 분과위원장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사회 진흥 활동	읍면동장이 자치위원 위촉 시군구별로 자치활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자료: 김필두. (2013).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15.

2) 주민자치회의 추진 배경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의 민간 측 파트너로 1999년부터 읍면동에 주민의 자치 기구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자치 기능 강화 측면보다는 문화·복지 기능 강화 측면이 강하였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장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주민자치의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의 지역 대표성, 자치 역량, 적극적 활동 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주

민자치회 전환이 모색되었다.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특별법(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별법 제20조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별법 제21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주민 화합 및 발전,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의 수행으로 규정하였다.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

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모델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개를 개발해 제시하였다.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현행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 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조례의 개정만으로 실시가 가능한 협력형 모델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3483개 읍면동 중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와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총 49개 읍면동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1차 31개, 2차 18개 추가).

3) 주민자치회의 주된 역할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사업은 공무원이 아닌 지역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다.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마을성)이고, 주민의 참여와 봉사에 의해 이뤄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주민성)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활동(사업성)이라는 점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은 이익 집단의 활동이나 동호인 집단의 사적인 활동과는 구분되는 공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사업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주민자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주민자치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사업은 크게 마을 강좌, 마을 만들기(마을사업), 마을 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 강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문화·교양, 외국어, 취미·부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는 생활체육이나 문화·교양 등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취미활동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단순한 개인의 취미생활을 넘어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되고 있다(예: 개인의 취미생활로 주부노래교실에서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어머니합창단을 조직하여 마을 행사 등에 출연). 또한,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육아교실), 주민의 의식 수준을 높여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를 부여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며(동네 인문학), 지역사회의 일꾼이나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수단(지역학)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마을 만들기(마을사업)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사업을 말한다. 마을사업은 마을의 실정에 맞고 마을의 개성 있고 독특한 특성을 살리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사업에서는 주민들에게 유익하여 주민들이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며 주민 스스로가 선정한 사업을 마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해 가는 체계와 과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사업의 유형은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복지사업, 마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역문화 활

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마을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같은 경제적인 사업, 주민의 삶의 질과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 행사는 마을 단위에서 주기적 혹은 연례적으로 열리는 축제이다. 마을 행사에는 면민체육대회, 동민의 날 등과 같이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사회적인 행사가 있고,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문화적인 행사, 동제와 성인식 등과 같은 의례적인 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근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사업은 몇 가지 원칙을 내포한다. 그 원칙이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것,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것,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노력을 가질 것,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마을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제시한 원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표 3. 주민자치사업의 유형과 사례

구분		유형					
마을 강좌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 교육	사회 진흥	주민자치	주민 편익
		취미교실 풍물놀이 역사 찾기	어린이 놀이방 청소년 공부방	생활과학 정보화 교육 동네 인문학	봉사 품앗이 소공원 관리 전입 환영회	지역 문제 토론	헬스장, 생활 정보 제공 동네 안내서
마을 경관		가로	골목	산	하천	유희지	건물/주택
		가로등 정비	벽화 그리기	등산로 나무 이름 달기	셋강 살리기	야생화 화단	간판 정비 옥상공원 조성
마을 안전		인공재해			자연재해		
		방법, 청소년 선도, 불조심			수해, 풍해, 설해 방지		
마을 복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불우 청소년	유아	장애인	다문화가정
		집수리 이미용 봉사	실버스토리	장학금	공동 육아	장애아 돕기	다문화 지원
마을 경제		공동 분배		공동 구매		공동 생산·판매	
		텃밭 가꾸기, 김장 담그기		직거래 장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기업	
마을 사회		순수 인적 교류		인적·물적 교류		불특정 교류	
		이웃 간 인사, 전입자 환영회		바자회, 베품시장		마을 축제, 공연, 전시회	
마을 문화		문학	예술	풍속	학문		종교
		글짓기	음악, 미술, 공예	풍물, 민 속놀이	동네 인문학		동아리
마을 행사		설날한마당, 정월대보름 행사, 책사대회, 읍면동민의 날, 가정의 날, 추석 행사					

자료: 김필두. (2013).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18.

3. 마을 만들기-주민자치와 복지의 상생 방안

가. 지역사회복지사업과 마을 만들기(마을사업)의 상생 필요성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와 복지사회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데 반해 복지사회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국가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대상과 범위도 정부가 결정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반면 복지사회는 주체도 다양하고 대상도 사회 일반으로까지 확장된다. 개인과 공동체, 집단과 기업이 모두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동적인 행정적 복지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주체인 정부에 더해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적 주체가 능동적으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에 나설 필요가 있다(김승의, 김경숙, 김경우, 김귀자, 김장권, 김종엽 등, 2007, p. 111). 이러한 복지 주체의 다양성과 지역자치분권이 맞물려 지역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communitiy welfare)란 지역과 사회복지의 합성어로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복지라는 의미를 가진다. 지역복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혹은 ‘지역사회’로 불리는 커뮤니티

(community)라는 낱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communitiy)는 공동 소유, 공동체, 공동 운명체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매키버(R. M. Maciver)는 지역사회를 공동 생활권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의 기초는 지역성과 지역사회 의식이라고 하였다. 지역사회에서는 특정한 지리적 기반이 중요하지만 주민이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도 중요하다.

오늘날 주민의 지역적 구분은 크게는 국가, 작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과 같은 국가 안의 행정구역 형태로 나뉜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시장권, 통학권, 종교생활권, 통근권 등과 같은 일상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택복지서비스, 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로는 대상자를 쉽게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읍면동이 적합하다. 읍면동을 복지 전달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빈곤, 노령, 사망 등에 대한 현금 급여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환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대인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내에서의 민관 협력 관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읍면동 단위의 민관 협력 파트너로는 주민자치회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는 시군구 차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이 합류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형이나 주민자치회를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로 상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혁신 읍면동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주민조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나. 마을 만들기-주민자치와 복지의 상생 방안

1) 상생을 위한 기본 조건과 내용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서 민관 협력을 위해 주민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7, p. 8).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꾸준히 운영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을 마을자치의 중심지로 삼고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마을자치의 중심이고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 시대 읍면동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관 협력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 파트너가 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복지 전달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과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마을 만들기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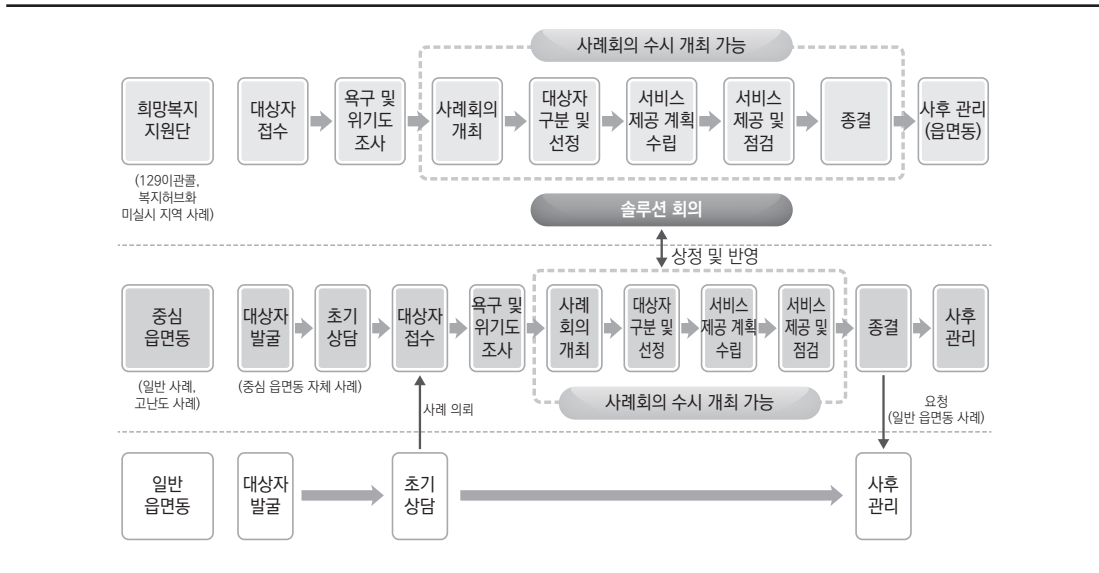
마을 만들기과 복지가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첫째, 주민 대표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이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에서는 읍면동 복지 담당팀의 공무원이 주체가 되고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민관 협력에서도 복지팀의 공무원이 협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이나 복지행정팀은 읍면동 민관 협력 및 인적 안전망 구성과 운영, 권역 단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 사업 수행, 읍면동 자원 발굴과 관리, 권역 내 자원 공유, 이웃 돕기 등의 단순 민간 자원 배분, 읍면동 자원 요청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pp. 16-20). 지역복지의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복지의 중심 기관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은 정부의 지침에 크게 좌우된다. 주민을 위한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지원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획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치분권의 4대 자치권 중의 하나인 지역복지 관련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의 자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치분권은 주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가 주체가 되고 공무원은 지원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지역복지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과 주민 대표 간의 역할 분담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핵심은 읍면동에서의 통합사례관리이다.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는 통상적으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과 신청,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 관리 등의 10개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림 1. 사례관리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업무 매뉴얼. p. 80.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팀장을 포함해 4명인데, 4명이 평균적으로 네 가지 업무를 담당하므로 1명이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복지플래너업무를 같이 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1명이 안 된

다. 또한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1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표 4. 성동구 금호1가동 생활복지팀 담당 업무

직위	담당 업무
팀장	○ 생활복지업무 총괄 ○ 이의 신청·고질 민원 전담 처리 ○ 복지플래너 및 사례관리(23, 25통) ○ 단체 관리(자원봉사캠프)
주무관	○ 복지상담전문관-초기 종합 상담 ○ 어르신복지플래너 ○ 문화누리카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자원봉사 ○ 복지플래너 및 사례관리(12, 22, 26통)
주무관	○ 장애인복지 ○ 주거복지, 초중고 교육비 지원 ○ 복지플래너 및 사례관리(24, 27통)
주무관	○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총괄(보육) ○ 보호, 보건, 통장사업 ○ 여성, 아동, 청소년복지 ○ 복지플래너 및 사례관리(28통)
주무관	○ 장애인행정도우미

자료: 직원 및 전화번호. 성동구 금호1가동 주민센터. <http://www.sd.go.kr/sd/dong.do?mCode>에서 2017. 10. 3. 인출.

첫 번째 단계인 대상자 발굴에는 읍면동 및 시군구 복지 담당자,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주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 복지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교사, 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의 방문형 서비스 제공 기관 인력) 등 지역 내 다양한 민간단체와 관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 2017, p. 85).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빠져 있으므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사례회의 전 4개의 단계는 담당 공무원 1명이 전담하여 처리하므로 업무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사례회의 전 단계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 번째 단계인 ‘서비스 제공 및 점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의 주민자치사업(마을 만들기) 중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공무원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위원들도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 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사후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긴다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형 복지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효율성의 원칙이다. 지역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내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외부의 자원과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복지 상담이나 방문간호 등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사례관리는 어쩌다 한번씩 찾아오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보다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주민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민간 자원이 공무원을 보조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관

자와 보조자는 책임감 등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전달 기관,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복지기관이 다양한 자원봉사자, 후원자, 전문인력 등을 동원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도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 주민자치회를 통해 자원봉사자 등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성의 원칙이다. 지역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비용 문제이다. 지역복지를 실천할 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외부 자원의 도움을 받아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민자치회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서울의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종료구는 전체 300개 프로그램의 40%에 해당하는 120개 프로그램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용산구는 전체 369개 중 189개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성동구는 586개 프로그램 중 341개가, 광진구는 404개 프로그램 중 106개가 각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이었다(서울특별시, 2016, pp. 12-40).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주민자치회에 맡기고, 더욱 전문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복지공동체 구축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지역복지는 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관계망이 주로 지연과 학연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마을공동체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새로운 복지공동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비용과 시간 등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통반조직, 새마을 등 행정 지원 조직, 마을공동체, 마을기획단 등이 주민자치회의 틀 안에 포함된다면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다양한 공동체를 그대로 복지공동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과 역할 분담 문제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 지원 조직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조직이므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게 활동하려면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분과위원회 등의 형태로 주민자치회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상생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와 복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 민민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자치를 통해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전달체계의 중심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4대 자치권 중의 하나인 자치복지권이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시책이나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혁신 읍면동은 주민이 주인 되는 건강한 마을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마을 단위의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마을 의제로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선정된 마을계획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 2017, p. 2). 따라서 마을 만들기와 복지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의 중심은 주민-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관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이하의 지역사회에서 공공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수는 제한되어 있고, 특정한 주민(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로 마을의 유지)이 다수의 단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인물을 다른 장소에서 여러 번 만나 같은 사안을 의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력과 재원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협력 파트너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민관 협력이라고 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민 협력 시스템으로, 관이 주도하고 민이 보조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민이 주도하고 관이 보조하는 관계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민관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복지 재원 조달 등의 측면에서는 민이 주도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행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자치나 주민자치의 기본 취지에 맞게 복지사업의 선정권은 민간(주민자치회)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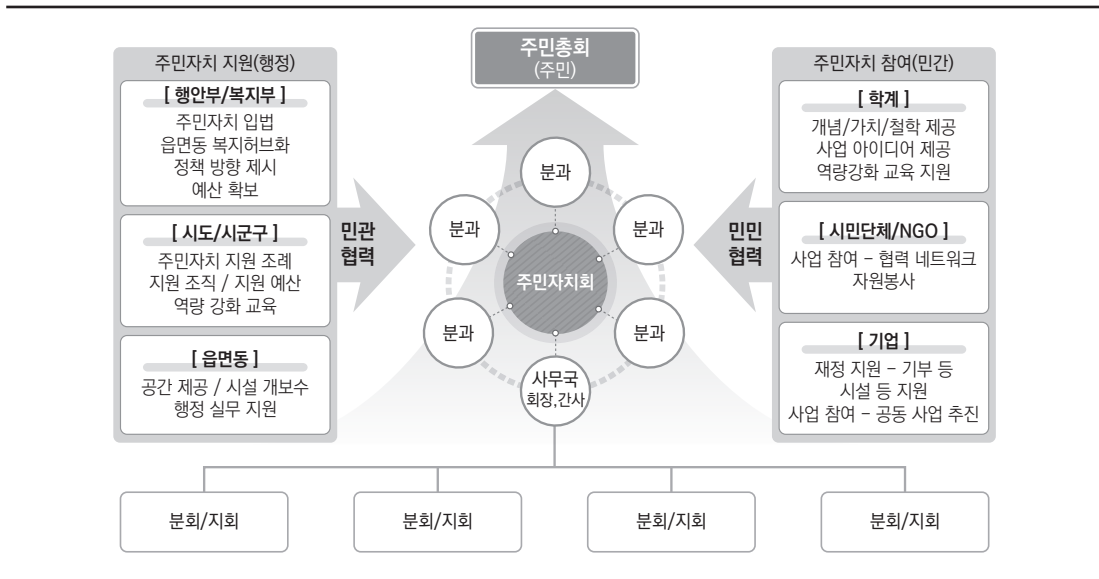
셋째, 민민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행정의 중복이나 재원의 중복적인 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의 민간 파트너로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행정과의 협력 사업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많은 단체들에도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통, 리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통, 리는 읍면동을 지원하는 하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함)하여 읍면동에 종속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장과 일부 통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

고 형식적으로 읍면동장의 임명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인 읍면동에 포함시키기도 다는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복지와 관련된 복지통(이)장도 주민자치회의 지회 혹은 분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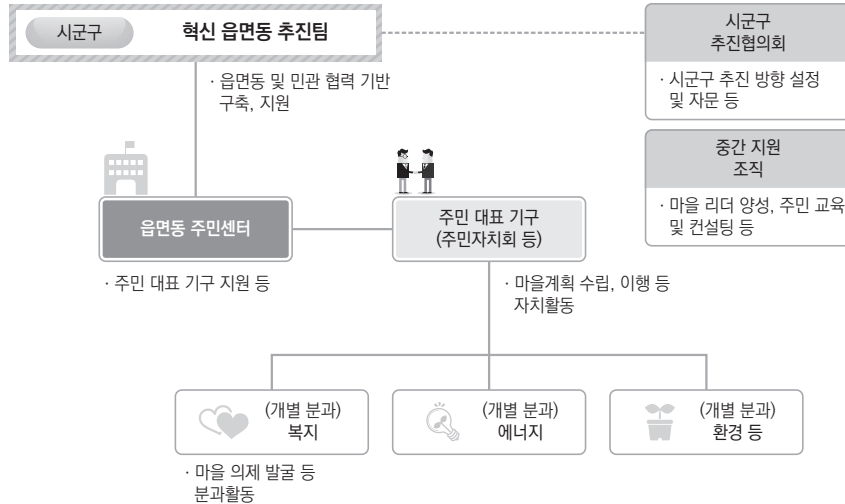
그림 2. 주민자치회 중심의 민관, 민민 협력 시스템의 구조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의 관계이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를 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하부 조직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읍면동 단위 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의 소속 기관인 실무협의체와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발굴, 지역사회보장 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실무 현장에서 보면 읍면동 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대부분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지역 내 다른 단체 소속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분리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의 틀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혁신 읍면동 추진 계획(안)에서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가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에 서고 읍면동의 행정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자치회의 분과 형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 혁신 읍면동 추진 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2017). 읍면동 기능개선 등을 위한 '17년도 혁신 읍면동 시범실시 추진계획(안). p. 4.

4. 나가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최고 목표로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복지정책 성공 여부도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먼 중앙정부보다 가까운 지방정부를 신뢰하고, 이웃사촌인 주민자치위원을 더 신뢰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인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중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일반 주민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214-215
- 김수신, 정홍익. (1997).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김승의, 김경숙, 김경우, 김귀자, 김장권, 김종엽 등. (2007). 현대사회복지개론. 공동체.
- 김필두. (2013).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 15-18.
- 보건복지부. (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업무 매뉴얼.
- 서울특별시. (2016). 2016년 자치회관평가자료집.
- 정하성, 구분영, 이장협, 이택용, 이창수, 박정호 등. (1995). 지역사회개발론. 백산출판사. pp. 24-26.
- 행정안전부. (2017). 읍면동 기능개선 등을 위한 '17년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
- Durose, C., & Richardson, L. (2009). 'Neighbourhood': a site for policy action, governance...and empowerment? in C. Durose, S. Greasley and L. Richardson. (eds). Changing local governance, changing citizens. *The Policy Press*, 34, 31-52.
- Greenberg, E. S. (1983).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Boston: Little Brown & Co. 27.
- Hallman, Howard W. (1987). Neighborhoods. London: Sage. 33-38.
- Kooiman, J. (2005).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64.
- Lowndes, V., & Sullivan, H. (2008). How Low Can You Go? Rationales and Challenges for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86(1), 62.
-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Reading, MA: Addison-Wesley. 24.
- Schmitter, Philippe C. (1979).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in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in P. C. Schmitter & G. Lehmbruch(eds.)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15.
- 보건복지부. (2017. 7. 5.). 시군구·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함께 모인다.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17. 9. 26.).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 모색 - 행안부, '혁신 읍면동'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에서 2017. 10. 2. 인출.
- 국무조정실. (2017). 100대 국정과제. http://pmo.go.kr/pmo/inform/inform01_01a.jsp에서 2017. 10. 2. 인출

사회복지. (n.d.).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에서 2017. 10. 2. 인출.

직원 및 전화번호. 성동구 금호1가동 주민센터. <http://www.sd.go.kr/sd/dong.do?mCode>에서 2017. 10. 3. 인출.